#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45 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김대식·조경태·조정훈

고동진 · 김기현 · 박성민

김예지 · 주진우 · 곽규택

정성국・백종헌・강승규

서지영 • 박성훈 • 김소희

신동욱 • 박수영 의원

(17일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.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,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・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. 또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시설을 설치・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・운영하고 있음.

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,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, 공공기관 등과 연계·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·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, 교육감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·군·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·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8조 의2에 따른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·협력을 추가하고자 함(안 제14조제3항,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).

##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6조에 따른 시·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·협력

제16조의 제목 "(지역진로교육센터)"를 "(시·도진로교육센터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지역진로교육센터"를 각각 "시·도진로교육센터"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)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·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·군·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

- 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 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대학의 진로교육) ①・②	제14조(대학의 진로교육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
	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
	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
	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
	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
	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
제15조(국가진로교육센터) ① (생	제15조(국가진로교육센터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	②
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0.</u> 제16조에 따른 시·도진로
	교육센터 및 제18조의2에 따
	른 시・군・구진로체험지원
	센터와 연계・협력
<u>10</u> . (생 략)	<u>11</u> 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 ① 교	제16조 <u>(시·도진로교육센터)</u> ① -
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	
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	
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	
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	

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<u>지역진로교육센</u> <u>터</u>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 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<u>지역진로교육</u> 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신 설>

<u>시·도진로교육</u>
센터
② <u>시·도진로교</u>
육센터

제18조의2(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)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시·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시·군·구의 실정에 맞는진로정보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·군·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진 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